

朝鮮 通信使■ 포함한 韓·日 관계에서의 飲食文化 교류*

2. 朝鮮中期 韓·日 관계에서의 교역물품과 日本使臣 접대

김상보** · 장철수***

대전보건대학 전통조리과**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년 9월 28일 접수)

Food culture Interchange in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cluding the Cho Sun Communication Facilities*

2. The trade goods and receptions for Japanese envoy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t the middle period of the Cho Sun era

Sang-bo Kim** and Chul-soo Chang***

Taejon Health Sciences Colleg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Received September 28, 1998)

Abstract

Food goods traded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middle period of the Cho Sun era included Insam (Jinseng), rice, beans, honey, perilla oil, starch, adlay, walnuts, pine nuts, jujubes, hazelnuts, and dried chestnuts as exports ; and pepper as imports.

The number of Japanese envoys that visited regularly was one thousand five hundred people a year. The receptions that were held for them during the middle period equaled those of the first term of the Cho Sun era, but these receptions were only held in Pu-san.

The expense of daily meals was broken down into 8 grades ranging from ₩129,300 to ₩2133. The daily meals included Jo-ban (breakfast), Jo-seok-ban (breakfast and dinner), and Ju-jeom-shim (lunch) for the Japanese who visited regularly. During the course of a year, the total amount spent on daily meals was put at a billion won.

The banquet style meals included Ha-seon-da-rye (a welcome tea party), Ha-seon-yeon (a welcome banquet), No-cha-yeon (a banquet that was held on the street), and Ye-dan-da-rye (a drink banquet that was held when silk was offered as a gift). It also included Byeol-yeon (a banquet out of the ordinary), Sang-seon-yeon (a farewell banquet), and Myong-il-yeon (a banquet that was held on a national holiday). The banquet style meals were composed of Ceon-tack (to set a table for dinner), Sang-hwa (a flower that was put on the food), Kwan-hwa (to offer a flower when a banquet was held), Ju-9-jan (the ninth wine glass), Dae-seon (meat), music, and Jung-bae-rye (a banquet that was held again after a banquet).

The Cho Sun government held banquets forty five times for the Japanese, the food expense for the banquets was put at two hundred and thirty million won.

*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I. 서 론

조선 전기의 교린(交隣) 외교는 임진왜란 이후, 1609년 기유약조의 체결로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조선 전기 대일 통교의 중심지 였던 삼포(三浦)는 임신약조(1512)와 정미약조(1547)를 거치면서 내이포와 영포가 폐쇄되고, 부산포가 유일한 개항지로서 등장하게 되었는데, 기유약조 이후에는 일체의 일본 사신 영접은 부산 왜관에서만 하게 되었다.

한편 임진왜란 이후에는 일본에 파견하는 사신의 횟수도 증가하게 되었고, 조선에서는 에도(江戸)에 파견하는 통신사(通信使)와 대마도에 파견하는 문위역관(問慰譯官)이 있었으며, 일본에서는 국왕사선·대마도주·세관선·수도서인선·수직인선·차왜 등이 있어, 이들이 각각 일본과 조선에서 외교와 무역을 아울러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양국 사신의 교류는 조선 전기의 일본의 일방적 진상(進上)에 따른 조선 정부의 회사(回賜)라고 하는 무역 형태와는 성격이 다른 교역이 임진왜란 이후 한·일 간에 이루어 졌던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중기의 한·일 관계에서의 교역 물품과, 일본 사신에 대한 접대문화를 밝힘으로서, 음식문화 교류의 한 면을究明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조선 중기의 대일 관계

1. 임신약조(壬申約條)와 정미약조(丁未約條)

항거왜인(恒居倭人)에게 행한 심한 사역과 접대에 대한 불만으로 비롯된 삼포왜란(중종5년, 1510)은, 중종7년(1512)의 임신약조(壬申約條)에 의하여 표면상 왜란은 일단락 되고 대마도와의 통교가 복구되었다.

임신약조의 주요 골자는 세종25년(1443)에 맺어서 삼포왜란 전까지 시행해 왔던 계해약조(癸亥約條)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서, 삼포의 항거 왜인의 폐지와 도주 세관선 50척을 반감하여 25척으로 한다는 것, 도주에게 사급하는 세사미두를 200석에서 100석으로 반감하고, 일본의 사송선(使送船)의 포소(浦所)를 제포한 곳 만으로 한정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종16년(1516)에는 제포 몇 부산포에 정수 외의 왜선이 다수 도래하기 때문에, 부산포 13척 제포 12척으로 나누어 정박할 것을 허락하였고(하, 126-127), 중종 18년(1523)에는 도주의 세관선을 30척으로 다시 증액하였다(『중종실록』 卷49, 중종18년 9월, 庚午條).

중종39년(1544) 사량진왜변에 의하여 중종 18년에 추증한 30척을 사감하여 25척으로 환원하였다. 이 사감

은 명종 2년(1547)의 정미약조(丁未約條)에 의한 것이다(『명종실록』 卷4, 명종 2년 2월 乙未條). 정미약조의 주요 골자는 30척을 25척으로 사감하는 외에, 제포를 폐지하고 부산포 만을 포소로서 입박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즉 부산포가 유일한 개항지로서 등장하게 되었다(『부산시사』).

2. 임진왜란 이후의 국교 재개와 기유약조(己酉約條)

무로마찌막부(室町幕府)의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국내를 통일한 도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을 가교로 명나라까지 정복하겠다는 야심하에 일으킨 임진왜란은, 도요토미히데요시의 사망에 따라 선조 31년(1598) 7년간의 긴 전쟁의 종결을 고하게 되었다.

실권을 잡고 있었던 토쿠가와이에야스(徳川家康)에 의한 국교 재개 교섭과, 선조 36년(1603) 토쿠가와이에야스가 에도(江戸, 현재의 東京)에 막부를 개설하고 관백이 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화호(和好)를 요청해 올에 따라, 선조 37년(1604), 선조 40년(1607) 통신사(通信使)를 일본에 파견하게 되었고 비로소 국교가 회복된다. 광해군 원년(1609)에는 기유약조(己酉約條)가 체결됨으로서 20여년 동안의 혼란했던 일본과의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기유약조의 주요 내용은 도주의 세관선을 줄여서 17척으로 하고 특송선을 합하여 모두 20척으로 한다는 것, 도주에게 사급하는 세사미두(歲賜米豆)를 100石으로 하고, 일본 사신이 부산 왜관에 머무는 날자의 기한을 도주의 특송(特送)은 110일 세관선은 85일 차외는 55일로 하며, 왜관에서의 접대에는 세가지의 예가 있는데 국왕사·도주의 특송사·대마도의 수직인(受職人)으로 나누는 것과, 과해량(過海糧)은 대마도 사람이나 도주의 특송인은 5일량을 더 지급하고 국왕의 사신은 20일 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하, 127-129). 이 기유약조 이후 일본사신의 영접은 경성에서 행하지 않고 부산 왜관에서 전적으로 하게 된다.

III. 일본 선박과 입국 왜인의 규모

1. 정례적으로 부산포에 오는 선박과 연례 입국 왜인

해마다 정례적으로 오는 선박에 타고 오는 일본인을 연례 입국 왜인이라 한다. 연례입국왜인은 기유약조에 나타나 있는 세관선(歲遣船)¹⁾을 타고 오는 일본인을 말하는 것으로 세관선에는

1) 세관선(歲遣船) : 사송무역선(使送貿易船).

국왕사선(國王使船, 幕府使船)

대마도 도주(島主)의 세견선

수도서인선(受圖書人船)

수직인선(受職人船) 이 있었다.

국왕사선은 국왕 즉 관백(關白)의 사송선을 말하는 것인데, 후에는 국왕이 사신을 보내는 예가 없어지고, 대신에 대마도 도주가 관백의 뜻을 전하는 대차왜(大差僕)로 대신하였다.

연례 송사선이라고도 불리었던 대마도 도주의 세견선에는 기유약조의 규정에 의하여 20척으로 제한하였다. 제1특송선 · 제2특송선 · 제3특송선 · 세견제1선 · 세견제2선 · 세견제3선까지는 대선(大船), 세견제4선부터 제10선까지는 중선(中船), 세견제11선에서 제17선까지는 소선(小船)으로 하였다.

수도서인선(受圖書人船)이란 조선 정부로부터 도서(圖書, 證印)를 받은 일본인의 송사선으로서, 기유약조의 체결 당시에는 기유약조에 관계하였던 일본 국사(國師)인 중 켄소오(玄蘇)와 대마도 도주(宗義知)의 가신(家臣)인 애나가와시게노부(柳川調信) 뿐이었으나 그 후 만송원송사선²⁾ · 유방원송사선³⁾ · 이정암송사선⁴⁾ · 평언삼송사선⁵⁾이 생겨났다.

수직인선(受職人船)⁶⁾은 조선 정부로부터 관직을 받은 일본인이 연례적으로 타고 오는 선박을 말한다.

이상의 정례적으로 오는 선박 중에서 연례 송사선이었던 대마도 도주의 세견선 · 수도서인선 · 수직인선을 중심으로 하여 연례 입국 왜인의 숫자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세견 제1선……정관 1인, 도선주(都船主) 1인, 봉진압물(封進押物) 1인, 반종(伴從) 3명, 격왜(格倭) 40명, 수목선 격왜(水木船格倭) 15명

세견 제2선~제3선……정관 1인, 반종 1명, 격왜 40명

세견 제4선~제10선……정관 1인, 반종 1명, 격왜 30명

세견 제11선~제17선……정관 1인, 반종 1명, 격왜 20명

1특송사선~3특송사선……정관 1인, 도선주 1인, 2선주

1인, 봉진압물 1인, 사복압물(私卜押物) 1인,

시봉(侍奉) 1인, 반종 7명, 격왜 40명, 부선 격

왜 30명, 수목선 격왜 20명

부특송사선……정관 1인, 부관 1인, 도선주 1인, 2선주

1인, 유선주(留船主) 1인, 봉진압물 1인, 사복

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7명, 격왜 40명, 부선

격왜 30명, 수목선 격왜 20명

만송원 송사선……정관 1인, 도선주 1인, 봉진압물 1인,

반종 3명, 격왜 40명, 수목선 격왜 15명

이정암 송사선……정관 1인, 반종 3명, 격왜 40명

평언삼 송사선……정관 1인, 봉진압물 1인, 반종 3명,

격왜 40명

중절 5선……정관 1인, 반종 1명, 격왜 ?명(하, 16-50)

(『부산시사』).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입국한 왜인은 약 1500명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숫자는 조

2) 만송원송사선(萬松院送使船) : 기유약조의 체결에 공을 세운 쓰시마 도주 소오 요시모도(宗義智)가 죽은 후 종벽산(鍾碧山)에 원당(院堂)을 지어 만송원(萬松院)이라 이름하고, 조선을 위하여 성심으로 제사를 받だ다고 하면서 1622년(광해군 14)에 서계(書契)를 예조에 보내어 세견선의 허용을 간절히 요청하여 왔으므로, 이것을 허가하여 준 데서 생겨난 것이다. 선박의 수는 정선 1척, 수목선 1척, 가환재도선 1척으로서 도합 3척이었으며, 건너오는 시기는 6월.

3) 유방원송사선(流芳院送使船) : 애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의 세견선인데, 1611년(광해군 3)에 그의 아들 모도나가(智永)는 시게노부가 죽은 후에 사당을 지어 유방원이라 하고, 제사의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유방원이란 증인(證印)을 내려 주기를 간청하므로, 이를 허가함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시게노부의 손자 시게오끼(調與)가 대마도 도주 소오씨의 집안과 세력을 다투다가 패하자, 1616년(인조 14)에는 도주의 요청에 따라 이미 만들어 주었던 도서를 도로 반환하기까지 하였으나, 2년 후에는 다시 돌려주게 되었다. 그러나, 유방원 송사선은 곧 없어졌고, 대마도 도주 소오 요시나리(宗義成)의 요청에 따라 1640년(인조 18)부터는 그 이름을 부특송사선(副特送使船)이라 고쳐 정선 1척, 부선 1척, 수목선 1척 가환재도선 2척이 해마다 8월에 정기적으로 부산에 건너옴.

4) 이정암송사선(以町庵送使船) : 1611년(광해군 3)에 기유약조를 체결할 때 일본 쪽의 대표로 활약한바 있는 켄소오(玄蘇)가 대마도의 할려산(華靄山)에 이정암이라는 암자를 지었는데, 그가 죽은 후 조선 정부로부터 이정암이라는 도서를 받아서 해마다 2월에 정기적으로 송사선을 파견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건너오는 배는 정선 1척, 가환재도선 1척.

5) 평언삼송사선(平彦三送使船) : 대마도 도주 소오 요시나리(宗義成)의 아명 히로미쓰(彥三)의 이름으로 증인(證印)을 받아 매년 한 번씩 건너오던 송사선이다. 1611년(광해군 3)에 소오 요시모도(宗義智)가 지난날 조선에서 소오 구마미쓰(宗熊満)에게 증인을 내린 사례를 들어 증인을 내려 달라고 간청하므로, 이를 허가한 것이다. 그 후 1657년(효종 8)에 요시나리가 죽자, 드디어 증인을 환수하고 송사선을 없애버림.

6) 수직인선(受職人船) : 조선 정부로부터 관직을 받은 일본인이 연례적으로 타고 오는 선박을 말한다. 조선 중기에 관직을 받은 사람으로는 등영정(藤永正), 세이소(世伊所), 마감칠(馬勘七), 평지길(平智吉), 평신시(平信時) 등 5명이 있었다. 이들은 임진란 후에 공로가 있다는 인정을 받아 상호군(上護軍) 또는 부호군(副護軍)의 무관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매년 1차씩 의무직으로 본인이 직접 와야 하며, 다른 사람을 대리로 보낼 수는 없게 되어 있었다. 그 후 수직인선의 도래는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한 때 단절되기도 하였으나, 겸대제(兼帶制)가 실시될 때 다시 겸대

선 전기의 공식적 연례 입국 왜인 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인조 13년(1635) 접대에 드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세견선의 겸대제(兼帶制)가 실시되어, 1특 송사선이 2특송사선과 3특송사선을 겹하고 세견제4선이 제5선 이하 제17선 까지를 겹함에 따라 정규적으로 입국하는 왜인의 숫자도 줄어들게 되었으나, 대신에 차왜(差倭)의 빈번한 내왕에 의하여, 비정규적으로 입국하는 왜인의 숫자는 증가하게 되었다(『부산시사』).

2. 비정규적으로 부산포에 오는 선박과 입국 왜인

비정규적으로 건너오는 일본 선박에 해당되는 것이 차왜(差倭)이다. 차왜(差倭)란 대마도 도주(島主)가 기유약조에 규정된 연례송사 외에 파견하는 일체의 사신을 말하는 것으로, 기유약조가 체결되었던 당시에는 차왜란 없고 연례송사 만이 있었다. 차왜는 세견선의 겸대제가 실시된 인조13년(1635) 이후 20여종이 넘는 차왜의 빈번한 내왕이 있었다(하, 52-94).

사절(使節)의 임무를 가지고 건너오는 차왜의 수는 임시로 필요한 때마다 왔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백고부차왜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본선 1척 · 전선 1척 · 각선(脚船) 1척 · 수목선 1척이 한 팀이 되어 왔으며 본선에는 정관 1인, 도선주 1인, 봉진암물 1인, 시봉 2인, 반종 16명, 격왜 70명이, 견선 · 각선 · 수목선에는 각각 격왜가 20명이 되므로 한번에 온 일행의 총 숫자는 151명이 되고 있다(하, 53-56) (『부산시사』).

IV. 韓 · 日관계에서의 교역 물자

조선 전기에 일본 사신들이 조선에 갖고 온 물품은 한약재 · 후추 · 설탕 · 국수 등의 식품류, 다목 · 주홍 · 백반 · 기린털 등의 물감과 매염류, 기용류 등이고, 일본인들이 조선에 청구하여 가지고거나 조선정부가 회사(回賜)한 물품은 대장경⁷⁾ · 화엄경 등 몇 베 · 모시 · 무명 · 쌀 · 콩 · 인삼 · 잣 · 오미자 · 꿀 · 소주 등이었다. 일본 사신들이 갖고 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해진 예가 없었고, 물품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회사(回賜) 하였으나 점차 일본으로 부터의 진상이 많아짐에 따라 회사 물품도 많아져서 조선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졌다.

연산군 7년(1501)에 내조한 사신 일행이 가져온 국왕의 별폭(別幅)⁸⁾속에 처음으로 매물(賣物)이라 칭하였다. 중종 5년(1510) 삼포왜란 후에 강화를 청하러 온 사신의 별폭 속에 매물(賣物)을 “상물(商物)”로 고쳐 칭하고, 상물(商物)의 종류가 많았으며, 이 때에 처음

으로 무역을 허락하고 이 상물을 거의 전부 조선 정부가 사주게 된다.

조선 중기, 한 · 일간의 외교는 조선에서는, 에도(江戸)에 파견하는 통신사(通信使)행과 대마도에 파견하는 문위역관(問慰譯官)이 있었으며, 통신사와 문위역관이 일본으로 가지고가는 예단(禮單)이나 별폭(別幅)은 교역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정기적인 세견선의 송사왜 이외에도 임시적인 차왜를 동래부에 파견하여 외교적 성격과 교역을 아울러 수행하였는데, 광해군 원년(1609) 기유약조 이후부터는 국왕(國王, 幕府)과 여러 제후(諸侯)가 사신을 보내는 예가 없어지고 단지 대마도 도주(島主)의 세견선인 세견선(歲遣船)의 송사왜(送使倭) 및 차왜가 중심이 되어 교역을 하게 되었다.

동래부의 왜관을 통한 통상 무역에는 진상(進上)과 공무역(公貿易) 및 사무역(私貿易)으로 구성되었다. 진상의 경우 일본이 조선의 국왕에게 물품을 현상하면(別幅) 조선 측이 답례로 회사품을 보낸 경우로(回禮), 조선 전기의 일본과의 교역 물품은 전부가 진상에 해당된다. 공무역이란 일본인들이 가지고 온 동철 · 납철 등을 조선에서 규정한 교환율에 따라 공목(公木)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후에는 공목 대신에 공작미(公作米)로 대치되었다. 이 진상과 공무역은 모두 년간 척수가 규정된 세견선 등의 각 송사선을 통해 이루어 졌고, 사절단의 구성 · 진상 · 공무역의 규모는 이들 사행의 등급에 따라 물품과 수량이 정해져 있었다. 사무역은 매월 6회(5일장) 왜관에서 개시하여 물품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금제품(禁制品) 이외에는 자유롭게 교환이 이루어 졌다.

이 밖에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무역 형태 이외에도, 조선 중기 양국간의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대마도 도주가 대마도의 소용(所用)이나 에도(江戸)의 요청에 의하여 조선측에 수시로 필요한 물품을 구무(求買)하는 형태가 있었다. 본 보고에서는 조선 중기 대일 관계에서의 교역 물자를 1600년대로 국한하여 검토하기로 한다(하, 32-33) (『왜인구청등록』).

송사선안에 포함되었으니, 이것이 소위 중절 5선(中絕五船)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1809년(순조 9) 이후 영구히 폐지됨.

7) 조선 전기 일본 사신이 대장경을 구청(求請)한 횟수는 國王使가 29회, 기타 호족 53회를 합하여 총 82회가 있었으나 조선에서 회사(回賜)한 사례는 46차례였다.

8) 별폭(別幅) : 다른 나라와의 왕복문서에 덧붙이는, 진상품이나 예물을 벌여 적은 목록, 또는 그 물품, 別幅回禮·별폭에 대한 답례, 또는 그 답례로 보내는 물품.

1. 일본에서 조선으로 온 교역물자

1) 식품류

후추

2) 물감·매염류

다목(丹木)·백반·대화진주(大和眞朱)⁹⁾

3) 기타

흑각(黑角)¹⁰⁾·동철(銅鐵)·납철(鑄鐵)·문지(紋紙)¹¹⁾·채화칠촌염경(彩畫七寸巒鏡)¹²⁾·채화대대연갑(彩畫臺大硯匣)¹³⁾·채화중원분(彩畫中圓盆)¹⁴⁾·적동명로(赤銅茗爐)¹⁵⁾

2. 조선에서 일본으로 간 교역물자

1) 식품류

들기름·꿀(清蜜)·녹말·율무·잣·개암·호도·황율(黃粟)·대추·녹두말(綠豆末)·쌀·대두·건대구어·황대구어

2) 약재류

인삼·단삼(丹蔘)¹⁶⁾·오미자·시호(柴胡)¹⁷⁾·마황(麻黃)·대황(大黃)¹⁸⁾·목숙(苜蓿)¹⁹⁾·생지황(生地黃)²⁰⁾·숙지황(熟地黃)²¹⁾·우황(牛黃)²²⁾·지모(知母)²³⁾·백령(白蘚)²⁴⁾·육리인(郁李仁)²⁵⁾·구미청심원(九味淸心元)·백작약²⁶⁾·백복령²⁷⁾·백출(白朮)²⁸⁾·상기생(桑寄生)²⁹⁾·호생간(虎生肝)·호두(虎頭)·호경골(虎脛骨)·호육(虎肉)·호담(虎膽)·천문동(天門冬)³⁰⁾·전호(前胡)³¹⁾·천마(天麻)³²⁾·석종유(石種乳)³³⁾·호황련(胡黃蓮)³⁴⁾·산두근(山頭根)³⁵⁾·저근백피(櫻根白皮)³⁶⁾ 등.

3) 금수류

개(犬)·말·활장(活獐)·매(鷹子)·백양(白羊)·노새(騾子)·수리(生雕)·야학(野鶴)·오리(鵝) 등.

4) 기용

제기(祭器)·다완(茶碗)·향로(香爐)·촛대(燭臺)·화병(花瓶)·등롱(燈籠)·작은칼(刀子)·유기(鑑器)·사기(沙器)·마성(馬省)³⁷⁾·채 등

5) 꽃과 나무

각종기화(各種奇花)·백목단(白牧丹)·앵도목·백

- 9) 대화진주(大和眞朱) : 왜주홍.
- 10) 흑각(黑角) : 빛이 검은 물소뿔.
- 11) 문지(紋紙) : 무늬를 넣어 만든 종이.
- 12) 채화칠촌염경(彩畫七寸巒鏡) : 채색그림으로 장식한 7치 거울.
- 13) 채화대대연갑(彩畫臺大硯匣) : 채색그림으로 장식한 큰 벼룻집.
- 14) 채화중원분(彩畫中圓盆) : 채색그림으로 장식한 중간치의 둥근 동이.
- 15) 적동명로(赤銅茗爐) : 찻물을 끓이는데 쓰는 적동화로.
- 16) 단삼(丹蔘) : 꿀풀과에 속하는 다년초. 금강산·설악산·가야산에 분포. 뿌리는 보혈에 효과가 있음.
- 17) 시호(柴胡) :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초. 한국·일본·중국에 분포. 말린 뿌리는 학질등의 발한·해열제로 쓰임.
- 18) 대황(大黃) : 마디풀과에 속하는 다년초. 시베리아·한국 북부에서 남. 뿌리는 대소변 불통·어혈의 치료에 쓰임.
- 19) 목숙(苜蓿) : 거여목.
- 20) 생지황(生地黃) : 地黃뿌리의 날 것. 성질이 차서 열이 대단한 血症에 쓰임.
- 21) 숙지황(熟地黃) : 생지황을 술에 넣고 여러번 쪐 약제. 補血·補陰하는 효과가 있어서 각종 허손증(虛損症)과 통경(通經)·강장제로 쓰임.
- 22) 우황(牛黃) : 소의 쓸개에 병으로 생기는 뭉친 물건. 강장제와 경간약(驚癇藥)으로 쓰.
- 23) 지모(知母) : 지모과에 속하는 다년초. 중국원산으로 황해도 등지에서 산출됨. 지모의 근경은 열로인한 해소·담 및 갈증 등의 약재로 쓰임.
- 24) 백령(白蘚) : 가위톱. (한의) 가위톱의 뿌리. 어린아이의 학질·대하·경간·음통·창독에 쓰임.
- 25) 육리인(郁李仁) : 산앵도의 씨의 알맹이. 소독약 또는 수종병(水腫病)에 쓰임.
- 26) 백작약(白芍藥) : 작약과에 속하는 다년초. 한국 각지에 분포함. 뿌리는 보혈·진정·부인과·외과의 약재로 진중됨.
- 27) 백복령(白茯頤) : 흰복령. 오줌·땀에 효험이 있고 담증·부종·습증·설사 등에 쓰는데 보(補)하는 효험이 있음.
- 28) 백출(白朮) : 삼주의 덩어리진 뿌리. 비위를 돋고 소화불량·구토·설사·습증 등에 쓰임.
- 29) 상기생(桑寄生) : 뽕나무의 겨우살이. 桑上寄生이라고도 함. 뽕나무 겨우살이의 줄기와 잎. 음력 삼월 삼칠에 따서 그늘진 곳에 말렸다가 부인병의 요통·증胎·하혈 등을 다스리는 약으로 쓰임.
- 30) 천문동(天門冬) : 호라지꽃의 뿌리. 해소·담·객혈·번조 등에 쓰임.
- 31) 전호(前胡) :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초로 흔히 바디나물이라함. 뿌리는 외감에서 오는 두통·해소·담등의 약으로 쓰임.
- 32) 천마(天麻) : 수자해꽃의 뿌리. 두통·현기증·풍비 등에 쓰임.
- 33) 석종유(石種乳) : 돌고드름. 석회로된 동굴의 천장에 고드름 같이 달려있는 석회암. 한방에서 보양약과 안과약으로 쓰임.

목련(白木蓮) 등

6) 옷감

백초(白絹)³⁸⁾ · 흰모시(白苧布) · 흰명주(白綿紬)³⁹⁾ · 검은베(黑麻布) · 흰무명(白木棉) · 생조포(生照布)⁴⁰⁾ · 백조포(白照布) · 생세포(生細布)⁴¹⁾ · 백세포(白細布) · 참사(蠶絲) · 금수(錦繡)⁴²⁾ · 금박(金箔) · 예복(禮服) · 심의(深衣)⁴³⁾ · 옥대(玉帶)⁴⁴⁾ · 홍전(紅氈)⁴⁵⁾ · 괴금(皮金)⁴⁶⁾ · 갑주(甲冑)⁴⁷⁾ · 무명 등

7) 서책류

마의서(馬醫書) · 의림촬요(醫林撮要) · 동의보감(東醫寶鑑) · 만병회춘(萬病回春) · 오경대전(五經大全) · 사서대전(四書大全) · 주자어류(朱子語類) · 주자대전(朱子大全) · 통해집전(通解集傳) · 칠서직해(七書直解) · 근사록(近思錄) ·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 경서(經書) · 회서(繪書) · 의례경전(儀禮經傳) · 대장경 등

8) 기타

생립지(生蠟紙)⁴⁸⁾ · 소유지(小油紙) · 상상장지(上上壯紙)⁴⁹⁾ · 상상백지(上上白紙)⁵⁰⁾ · 백지(白紙) · 우산지(雨傘紙) · 색지(色紙) · 네장불인유둔(油菴)⁵¹⁾ · 생옹피(生熊皮) · 유모옹피(有毛熊皮)⁵²⁾ · 양피(羊皮) · 표범가죽(豹皮) · 범가죽(虎皮) · 어피(魚皮) · 꽃자리(花席) · 황모필(黃毛筆)⁵³⁾ · 대모필(玳瑁筆)⁵⁴⁾ · 화룡필(畫龍筆)⁵⁵⁾ · 등근부채(圓扁子) · 참먹(眞黑) · 벼루 · 연적(硯滴)⁵⁶⁾ · 참빗 · 다리미 · 악기 · 배립축 · 안자(鞍子)⁵⁷⁾ · 아교 · 석린(石鱗)⁵⁸⁾ 등

이상에서 살펴 보 교역물자를 분류하면, 일본에서 조선으로 온 교역물자 가운데 후추 · 다목 · 백반 · 대화진주(大和眞朱)는 주로 별폭의 형태로 가지고 온 진상품(進上品)에 속하고, 동철과 납철은 공무역(公貿易)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간 교역물자 가운데 인삼 · 표범가죽 · 범가죽 · 꽃자리 · 황모필 · 백저포 · 흑마포 · 백목면 · 백면주 · 참먹 · 매 등은 조선의 사신들이 별폭의 형태로 가지고 간 진상품이고, 쌀 · 무명은 공무역이었으며, 그 밖의 물품 대부분은 일본의 구청(求請)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역거래였다.

조선 전기의 무역에서는 일본에서 다양한 물품이 들어왔던 것에 반하여, 조선 중기에는 반대로 조선에서 다양한 품목이 일본으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청(求請)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역품 가운데에는 꿀 · 들기름 · 녹말 · 율무 · 호두 · 잣 · 대추 · 개암 · 황율 등의 식품, 인삼 · 호육 · 호담 · 호간 · 단삼 · 오미자 · 마황 · 대황 등의 한약재, 매 · 개 · 말 · 오리 등의

금수류, 제기 · 유기 · 사기 등의 그릇과, 꽃 · 나무 · 옷감 · 서책 · 각종 문방구류 · 악기 등 넓은 범위의 각종 물품이 수출이 되고 있다.

이 구청에의하여 이루어진 무역품은 1637년 ~ 1692년 까지의 것으로, 특수한 경우에는 사기를 굽 때 필요한 사기장(沙器匠)이나 각색토(各色土) 및, 별당의 건축물, 유기장(鑑器匠) · 의원도 요청하였다. 조선에서도 대마도 소(牛) · 도검 · 유황 등을 일본에 구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으나, 양국간의 구청물은 일본측의 요청이 대부분이었다(『왜인구청등록』).

조선 초기부터 일본이 가지고 온 진상 물품인 후

- 34) 호황련(胡黃蓮) :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다년초. 뿌리는 열로인한 骨蒸 · 안질 · 치질 · 소아감질 등의 약으로 쓰임.
- 35) 산두근(山頭根) : 쥐방울과에 속하는 식물의 뿌리. 인후 병과 토제(吐劑)에 많이 씀.
- 36) 저근백피(櫻根白皮) : 가죽나무 뿌리의 속껍질. 치질 · 이질 등의 약재임.
- 37) 마성(馬省) : 마쇄(馬刷)와 같음. 솔.
- 38) 백초(白絹) : 생사로 짠 얇은 흰건.
- 39) 백면주(白綿紬) : 흰명주(白明紬).
- 40) 생조포(生照布) : 누이지 아니한 비치는 베.
- 41) 생세포(生細布) : 아주 가느다란 생베.
- 42) 금수(錦繡) : 비단에 수를 놓은 직물.
- 43) 심의(深衣) : 높은 선비의 웃옷. 흰 베로 만드는데, 소매를 넓게 하고 검은 비단으로 가를 두름. 상(裳)은 열두폭으로 되어있음.
- 44) 옥대(玉帶) : 벼슬아치가 공복에 띠던 옥으로 꾸며 만든띠.
- 45) 홍전(紅氈) : 붉은 빛깔의 전. 전이란 짐승의 털로 만든 모직물의 한가지. 또 이것으로 만든 자리 방석.
- 46) 괴금(皮金) : 금을 입힌 얇은 양가죽. 복식에 쓰임.
- 47) 갑주(甲冑) : 갑옷과 투구.
- 48) 생립지(生蠟紙) : 밀이나 백립 또는 파라핀 등을 먹인 종이.
- 49) 상상장지(上上壯紙) : 아주 썩 질이 좋은 두껍고 단단한 우리 나라의 종이.
- 50) 상상백지(上上白紙) : 아주 썩 질이 좋은 흰 종이.
- 51) 유둔(油菴) : 비가 올 때 쓰기 위하여 이어 붙인 두꺼운 유지(油紙).
- 52) 유모옹피(有毛熊皮) : 털이 붙어 있는 곰 가죽.
- 53) 황모필(黃毛筆) : 족제비의 꼬리털로 맨 붓.
- 54) 대모필(玳瑁筆) : 대모란 거문고와 향비파의 담배안복판에 붙이는 노란 빛깔의 소가죽으로 대모필이란 그 소가죽으로 자루를 꾸며서 만든 붓.
- 55) 화룡필(畫龍筆) : 용을 그리는 붓.
- 56) 연적(硯滴) : 벼룻물을 담는 그릇.
- 57) 안자(鞍子) : 말안장.
- 58) 석린(石鱗) : 운모(雲母)를 달리이르는 말. 석린(石鱗)이라고도 씀. 백색 · 흑색 두 가지가 있는데 백색은 유리의

추·다목·백반·주홍(大和眞朱에 해당)은 조선 중기에도 계속 중요한 진상 품목이 되어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목·백반·주홍은 주로 옷감을 물들이는데 쓰는 물감과 매염류로서, 궁중용의 채색으로 중요한 물자였다. 조선전기 일본사신들의 진상품이기도 하면서 사(私) 무역품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던 후추(『세종실록』)는 조선 전기의 약용으로서 용도는 점차 탈피하여, 중기에는 조미료로서의 용도로 사용되기에 이름에 따라, 국내에서의 소비량도 점차 많아졌을 것이다. 1609년 명나라사신 영접에서 후추를 조미료로 사용하고 있음이 문헌상에 나타나고 있다(『영접도감의궤』 1609, 1610).

V. 일본 사신 접대

부산에 도착하는 일본 사신들은 모두 부산 왜관에서 머물렀다. 이들은 기유약조(己酉約條)의 체결 내용대로 대마도 도주의 특송사는 110일, 세견선사는 85일, 각종 차외는 55일, 대차외는 60일, 재판차외(裁判差僕)⁵⁹⁾는 무한정으로 머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부산에서의 접대를 일상식과 연회식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일상식

1) 세견제1선송사(歲遣第一船送使)⁶⁰⁾

왜관에 머무는 기간은 85일, 숙공(熟供)은 2일이다. 매일 지급되는 식품의 재료와 분량은 다음과 같다.

〈정관(正官) 1인에 대한 1일분 분량〉

밥쌀[料米] 4되[升]	메밀[木米] 1되
병미[餅米] 1되	찹쌀[粘米] 1되
대두[太] 6되	장태(醬太) 4홉
주미(酒米) 2되4홉	초미(醋米) 4홉
건어(乾魚) 5마리〔尾〕	청어(青魚) 4마리〔尾〕
광어(廣魚) 4조(條) ⁶¹⁾	전복(全鰻) 2개(介)
생선(生鮮) 1마리〔尾〕	대구어(大口魚) 1마리
상어(沙魚) 4조	문어(文魚) 1조
해삼(海參) 5홉(合)	미역(蠶) 2냥(兩)
산닭(活鷄) ½마리〔袂〕 ⁶²⁾	달걀〔鷄卵〕 3개
꿀(淸蜜) 5작(勺)	참기름(眞油) 1홉 3작(勺)
백합젓(白蛤醯) 6작(勺)	소금 3홉
겨자(芥子) 4작	진곡(眞曲) 7홉
황율(黃粟) 3홉	대추(大棗) 3홉
곶감(乾柿) 2곳(串)	생율(生栗) 1되

〈도선주(都船主)⁶⁴⁾ 봉진압물(封進押物)⁶⁵⁾ 1인에 대

한 1일분 분량〉

정관에게 지급되는 분량과 같으나 생율·닭·달걀은 지급되지 않는다.

〈반종(伴從)⁶⁶⁾ 1인에 대한 1일분 분량〉

밥쌀[料米] 3되5홉	메밀[木米] 1되
병미[餅米] 1되	찹쌀[粘米] 5홉
대두[太] 4되	장태(醬太) 4홉
주미(酒米) 2되4홉	초미(醋米) 4홉
건어(乾魚) 3마리	청어(青魚) 4마리
전복(全鰻) 1개	대구어(大口魚) 4조
상어(沙魚) 4조	해삼(海參) 5홉
미역(蠶) 2냥	
꿀(淸蜜) 3작	참기름(眞油) 1홉
백합젓(白蛤醯) 6작	소금 2홉
겨자(芥子) 4작	진곡(眞曲) 7홉
개암(榛子) 3홉	

〈격왜(格倭)⁶⁷⁾ 1인에 대한 1일분 분량〉

밥쌀[料米] 2되

2) 세견제2선송사⁶⁸⁾, 세견제3선송사, 세견제4선송사

왜관에 머무는 기간은 85일, 숙공은 2일이다. 매일 지급되는 식품의 재료와 분량은 세견제1선송사와 같으나, 다만 정관에게는 건어(乾魚) 1마리〔尾〕를 감하였다.

3) 세견제5선 이하 제17선송사⁶⁹⁾

밥쌀[料米] · 병미[餅米] · 콩 · 주찬을 환산한 쌀[酒

대용: 전기절연체로 쓰임.

- 59) 재판차외(裁判差僕) : 무슨 일이 있으면 건너 왔다가 그 일이 끝나면 돌아가는 차례로서 부산 왜관에 머무는 기간은 무제한이며, 효종 2년(1651)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60) 1609년 기유약조의 체결로 17선으로 줄어든 세견선이 처음 과연되어 온 것은 1611년 9월로 정관은 平智直이었고, 그 후에는 1월에 도래하였다. 세견제1선이 돌아갈 때는 歲賜米豆인 쌀50石 · 콩50石을 대마도주에게 내렸음.

- 61) 생선류는 8條가 1尾에 해당.
62) 닭과 꿩은 4快가 1首.
63) 진곡(眞曲) :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누룩.
64) 도선주(都船主) : 여러 선단(船團)을 맡아 지휘하는 직임. 또는 그 직임에 있는 사람.
65) 봉진압물(封進押物) : 물건을 싸서 호송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66) 반종(伴從) : 일본사신의 수행원 가운데 하나.
67) 격왜(格倭) : 뱃사공의 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格軍)의 예인.
68) 本船은 공작미(公作米)를 실어가기 위해 정해진 때가 없

饋價米) · 육물(陸物)⁷⁰⁾은 그 수량을 헤아려 겸대대관⁷¹⁾에게 준다.

곶감 2곳
홍시 2개

생을 5홉

4) 이정암송사(以酌菴送使)

왜관에 머무르는 기간은 85일, 숙공은 2일이다. 매일 지급되는 식품의 재료와 분량은 세견제2선송사와 같다.

5) 1특송사(一特送使)

왜관에 머무르는 기간은 110일, 숙공은 5일이다. 매일 지급되는 식품의 재료와 분량은 다음과 같다.

〈정관 1인에 대한 1일분 분량〉

밥쌀 4되	메밀 1되
병미 3되	찹쌀 1되
밀가루 2되	소두 1되
대두 1말2되	장태 5홉
주미 3되2홉	초미 4홉
건어 5마리	청어 4마리
광어 4조	전복 1곳
생선 1마리	대구어 1마리
상어 4조	문어 1조
해삼 5홉	미역 2냥
산닭 1/2마리(1快)	달걀 3개
꿀 5작	참기름 1홉8작
백합젓 6작	소금 3홉
겨자 4작	진곡 9홉
황울 3홉	대추 3홉
곶감 2곳	생을 1되
홍시 3개	

〈도선주 · 2선주⁷²⁾ · 봉진압물 · 사복압물⁷³⁾ · 시봉⁷⁴⁾ 각 1인에 대한 1일분 분량〉

밥쌀 4되	메밀 1되
병미 3되	찹쌀 1되
밀가루 1되4홉	소두 1되
대두 1말	장태 5홉
주미 3되2홉	초미 4홉
건어 4마리	청어 4마리
광어 4조	전복 3개
생선 1마리	대구어 1마리
상어 4조	문어 1조
해삼 5홉	미역 2냥
산닭 1/4마리(半快)	달걀 2개
꿀 5작	참기름 1홉3작
백합젓 6작	소금 3홉
겨자 4작	진곡 9홉
황울 3홉	대추 3홉

〈반종 1명에 대한 1일분 분량〉

밥쌀 4되	메밀 1되
병미 3되	찹쌀 5홉
밀가루 1되	소두 5홉
대두 8되	장태 4홉
주미 3되2홉	초미 4홉
건어 3마리	청어 4마리
대구어 4조	상어 4조
전복 2개	해삼 5홉
산닭 1/4마리(半快)	미역 2냥
꿀 3작	찹기름 1홉
백합젓 6작	소금 2홉
겨자 4작	진곡 9홉
개암 3홉	

〈격왜 1명에 대한 1일분 분량〉

밥쌀 2되

6) 2특송사 · 3특송사

밥쌀 · 병미 · 콩 · 주찬을 환산한 쌀(酒饌價米) · 육물은 그 수량을 헤아려 겸대대관에게 지급한다.

7) 만송원송사(萬松院送使)

왜관에 머무는 기간은 85일, 숙공은 2일이다. 매일 지급되는 식품의 재료와 분량은 세견제1선송사와 같다.

8) 중절오선(中絕五船)

기유약조 때에 임진왜란 이전의 수직자(受職者)는

이 왔고, 제3선이 제2선에 寄乘하여 제1선과 같이 1월에 도래하였음.

69) 제5선이하 제17선까지 13척의 세견선은 제4선이 겸대(兼帶)하므로 서계(書契)와 별록(別幅)은 제4선송사편에 보내고 路引을 지참하며 도래시기에 관계없이 출래하여 公作米를 싣고 간다.

70) 육물(陸物) : 육지에서 나는 물건.

71) 겸대대관(兼帶代官) : 대관은 무역의 매매교섭 · 결재나 조선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잡물의 수취 · 재축 등을 담당한 대마도의 관리.

72) 2선주(二船主) : 도선주 밑에서 지휘하는 직임을 맡은 사람.

73) 사복압물(私卜押物) : 사사로운 개인의 짐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74) 시봉(侍奉) : 조선시대 일본에서 오는 사행(使行) 가운데 의 한 직임. 또는 그 직임에 있는 사람.

접대를 허락하지 않고 임진 · 정유왜란 이후에 공이 있는 등영정(주11참조)등 5인은 모두 한해에 한번 내조하게 하였다. 5인이 죽은 후 대마도주의 간청으로 진상(進上)과 공무역은 이전의 규례에 따라 1특송사의 배와 같이 오게 하였으나, 지공 및 연향은 모두 폐지하였다.

9) 부특송사(副特送使)

왜관에 머무는 기간은 110일, 숙공은 5일이다. 매일 지급되는 식품의 재료와 분량은 1특송사와 같다(하, 17-38).

2. 일상식에 소용된 비용

이상의 매일 지급되는 식품의 재료를 분석하여 본 결과 세견제1선송사와 세견제1선송사보다 격이 높은 1특송사와의 일공(日供)의 차이는 밀가루 · 소두 · 홍시를 세견제1선송사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식품의 종

류에 따라서 지급되는 양도 세견제1선송사에 적게 지급되고 있다. 배의 종류에 따라 식품의 양을 가감하고 식품의 재료도 가감된 것인데, 배의 종류의 차이 뿐만 아니라, 신분의 차이에 의해서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서, 세견제1선송사의 경우를 예로들면, 정관 · 도선주 · 반종 · 격왜로 구분하여, 도선주에게는 정관에게 지급된 日供보다 생을 · 닭 · 달걀을, 반종에게는 광어 · 생선 · 문어 · 닭 · 달걀 · 황을 · 생을 · 꽂감 · 대추를 각각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격왜에게는 다만 밥쌀만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식품의 가감은 조선조 중기의 식재료가 가진 가치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쌀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식품의 가격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들 각각의 식품 가격은 표 1과 같다(하, 42-43).

표 1의 작성은 金健瑞(1743~)가 지은 『增正交隣志』를 참고로 한 것이다. 『증정교린지』는 순조2년(1802) 음력 5월 편찬 완성된 책이다. 이 당시의 양기

〈표 1〉 조선중기 식품의 재료를 쌀로 환산한 가격 (『증정교린지』)

곡류	가격 (쌀)	가격 (쌀)		조미료류		가격 (쌀)		과일류		가격 (쌀)		생선류		가격 (쌀)		육류		가격 (쌀)		채소류		가격 (쌀)		기타		가격 (쌀)			
		곡류	조미료류	가격 (쌀)	조미료류	가격 (쌀)	과일류	가격 (쌀)	과일류	가격 (쌀)	생선류	가격 (쌀)	생선류	가격 (쌀)	육류	가격 (쌀)	육류	가격 (쌀)	채소류	가격 (쌀)	채소류	가격 (쌀)	기타	가격 (쌀)	기타	가격 (쌀)			
찹쌀	1말 5되	1말 5되	꿀	1말	20말	개암	1말	2말	대구어	1 마리	7되	밀린평	1 마리	1말 5되	표고 버섯	1말	4말	1말	4말	지초	1말	3말							
메밀	1말	1말	참기름	1말	20말	대추	1말	2말	상어	1 마리	6되	산닭	1 마리	7되	생강	5말	5말	오미자	1말	2말									
팥	1말	1말	들기름	1말	17말	황을	1말	3말	광어	1 마리	5되	달걀	1개	5홉						모곡 ⁵ (牟曲)	1말	6되							
녹두	1말	1말 5되	소금	1말	3되	잣	1말	1말	전복	1貼 ¹	6말	포육 (脯肉)	1첩	3말						진곡 (眞曲)	1圓 ⁶	3되							
녹말	1말	10말	겨자	1말	5말	호도	1말	1말	청어	1級 ²	5되																		
밀가루	1말	1말							곶감	1貼	1말 5되	전어 (乾魚)	1束 ³	5되															
콩가루	1말	6되							생밤	1말	1말 5되	문어	1 마리	5되															
									홍시	1개	8홉	해삼	1말	3말															
									배	1개	5홉	홍합	1말	2말															
												파백합 (皮白蛤)	1개	1홉 5작															
												백합젓	1되	5되															
												생복 (生餽)	1개	1되															
												생선 (生鮮) ⁴	1 마리	2말															

1 1貼은 20을 기준으로 함.

2 1級은 물고기 10마리를 두 줄로 역어서 20 마리를 일컫는 말.

3 10을 1단위로 하는 말.

4 생선(生鮮) : 살아있는 물고기를 말함.

5 모곡(牟曲) : 보리를 굽게 갈아 반죽하여 띠운 누룩.

6 1圓은 3되에 해당.

(量器)는 世宗 때의 1升 = 0.5967이었다. 즉 관승(官升) 일 경우 관승1升은 광무6년(1902) 이후 1升이 1.87가 된 현재의 신승(新升) 3合6勺과 같은 것으로, 현재 升의 약 1/3에 해당된다(金b, 48).

『증정교린지』가 편찬될 당시에는 10勺을 1合(흡), 10合을 1升(되), 10升을 1斗(말), 15斗를 1平石, 20斗를 1全石으로 하였는데, 全石은 가루나 술·기름 등과 같은 것을 계량하는데 사용하였다. 즉 『증정교린지』에 기록되어 있는 가루나 술·기름의 양에 사용된 石(섬)은 20斗에 해당되는 셈이다(金b, 49).

표 1을 통하여, 현재의 쌀 가격을 기준하여 1말(16kg)을 32000원으로 계산한 후 산정하면 막 1마리는 쌀 7되에 해당되므로 22400원, 달걀 1개는 쌀 5흡에 해당되므로 1600원이 되나, 조선조의 量制는 지금의 1/3에 해당되므로 막 1마리는 7467원 달걀은 533원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계산법으로 사신 1인에게 지급된 1일 식품의 가격을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세견제1선송사의 도선주 및 압물시봉〉

도선주·압물시봉에게 지급되는 정관에게 지급되는 분량과 같으나 다만 생율·닭·달걀만 지급되지 않는 다 하였으므로 1일 1인 지급 총액은 79,690원이 되고, 따라서 2인에게 85일 동안 총 지급된 액수는 13,547,300 원이 된다.

〈세견제1선송사의 격왜〉

밥쌀 2되 2133원이 매일 지급되었으므로, 격왜 55명에게 85일 동안 지급된 총액수는 9,971,780원이 된다.

〈세견제2선송사~세견제4선송사〉

세견제1선송사와는 정관에게 지급되는 일공 중에서 다만 건어 1마리를 감한 것 외에는 같다 하였으므로, 정관 1인 당 85일 동안 지급 총 액수는 7,159,490원이고, 세견제4선까지 정관이 3인이므로 총 합계 액수는 21,478,470원이 된다.

세견제2선에서 세견제4선까지의 반종은 3명, 격왜는

〈세견제1선송사의 정관〉

밥쌀	4되	4267원,	메밀	1되	1067원,	병미	1되	1067원
찹쌀	1되	1600원,	대두	6되	6400원,	장태	4흡	427원
주미	2되4흡	2560원,	초미	4흡	427원,	건어	5마리	2667원
청어	4마리	1067원,	광어	4조	2667원,	전복	2개	6400원
생선	1마리	2133원,	대구어	1마리	7467원,	상어	4조	3200원
문어	1조	667원,	해삼	5흡	1600원,	미역	2냥	-
산닭	1/4마리	1867원,	달걀	3개	1600원,	꿀	5작	1067원
참기름	1흡3작	2733원,	백합젓	6작	3200원,	소금	3흡	96원
겨자	4작	2133원,	진곡	7흡	747원,	황을	3흡	960원
대추	3흡	640원,	곶감	2곳 ^①	3200원,	생율	1되	1600원

합계 1人 1일 84760원

① 1곳(串)을 곶감 10개로 계산하였음.

세견제1선송사들이 왜관에 머무는 기간이 85일이므로, 정관에게 일상식으로 지급된 총 액수는 7,204,600원이 된다.

〈세견제1선송사의 반종〉

밥쌀	3되5흡	3733원,	메밀	1되	1067원,	병미	1되	1067원
찹쌀	5흡	800원,	대두	4되	4267원,	장태	4흡	427원
주미	2되4흡	2560원,	초미	4흡	427원,	건어	3마리	1600원
청어	4마리	800원,	전복	1개	3200원,	대구어	4조	3733원
상어	4조	3200원,	해삼	5흡	1600원,	미역	2냥	-
꿀	3작	640원,	참기름	1흡	2133원,	백합젓	6작	3200원
소금	2흡	64원,	겨자	4작	2133원,	진곡	7흡	746원
개암	3흡	640원,						

합계 1人 1일 38,300원

왜관에 머무는 기간이 85일이므로, 반종 3명에게 지급된 총 액수는 9,766,500원이 된다.

110명이므로, 85일 동안의 총 지급 액수는 반종 3명이 9,766,500원, 격왜 110명이 19,943,550원이 된다.

〈세견제5선송사~세견제17선송사〉

겸대제 이후 원역(員役)이 혁파되고 격왜만이 승선되었기 때문에 격왜만을 계산하면 총 합계는, 격왜 320명이 85일 동안에 58,017,600원이 된다.

〈이정암송사〉

지급되는 일상식 일공은 세견제2선송사와 같다하였으므로 정관 1인 · 반종 3명 · 격왜 40명에게 85일 동안 지급된 총 액수는 24,180,350원이 된다.

〈1특송사의 격왜〉

밥쌀 2되 2133원이 매일 지급되었으므로 격왜 90명

에게 110일 동안 지급된 총 액수는 21,116,700원이다.

〈2특송사 · 3특송사〉

겸대제 이후 원역이 혁파되고 격왜 만이 승선되었기 때문에 격왜 만을 계산하면 격왜 180명에게 110일 동안 지급된 총 액수는 42,233,400원이 된다.

〈만송원송사〉

일상식의 지급은 세견제1선송사와 같았으므로 정관1인에게 지급된 총 액수는 7,204,830원이 되고, 도선주 1인 · 봉진압물 1인에게 지급된 총 액수는 13,548,320원이 되며, 반종3명에게 지급된 총 액수는 9,767,520원이 되고, 격왜 55명에게 지급된 총 액수는 9,973,330원이 된다.

〈1특송사의 정관〉

밥쌀	4되	4267원,	멥밀	1되	1067원,	병미	3되	3200원
찹쌀	1되	1600원,	밀가루	2되	2133원,	소두	1되	1600원
대두	1말2되	12800원,	장태	5홉	533원,	주미	3되2홉	3413원
초미	4홉	427원,	건어	5마리	2667원,	청어	4마리	1067원
광어	4조	2667원,	전복	1꽃 ^①	32000원,	생선	1마리	21333원
대구어	1마리	7467원,	상어	4조	3200원,	문어	1조	667원
해삼	5홉	1600원,	미역	2냥	-	산닭	1/2마리	3733원
달걀	3개	1600원,	꿀	5작	1067원,	참기름	1홉8작	3840원
백합젓	6작	3200원,	소금	3홉	96원,	겨자	4작	2133원
진곡	9홉	960원,	황율	3홉	960원,	대추	3홉	640원
곶감	2꽃	3200원,	생율	1되	1600원,	홍시	3개	2560원

합계 1人 1일 129,300원

① 1꽃(串)을 꽂감 10개로 계산하였음.

1특송사들이 왜관에 머무는 기간이 110일이므로, 정관에게 일상식으로 지급된 총 액수는 14,223,000원이 된다.

〈1특송사의 도선주 · 2선주 · 봉진압물 · 사복압물 · 시봉〉

밥쌀	4되	4270원,	멥밀	1되	1067원,	병미	3되	3200원
찹쌀	1되	1600원,	밀가루	1되4홉	1493원,	소두	1되	1600원
대두	1말	10670원,	장태	5홉	533원,	주미	3되2홉	3413원
초미	4홉	427원,	건어	4마리	2133원,	청어	4마리	1067원
광어	4조	2667원,	전복	3개	9600원,	생선	1마리	21333원
대구어	1마리	7467원,	상어	4조	3200원,	문어	1조	667원
해삼	5홉	1600원,	미역	2냥	-	산닭	1/4마리	1867원
달걀	2개	1067원,	꿀	5작	1067원,	참기름	1홉3작	2773원
백합젓	6작	3200원,	소금	3홉	96원,	겨자	4작	2133원
진곡	9홉	960원,	황율	3홉	960원,	대추	3홉	640원
곶감	2꽃	3200원,	생율	5홉	800원,	홍시	2개	1707원

합계 1人 1일 98,470원

5인이 왜관에 머무는 기간이 110일이므로 지급된 총 액수는 54,158,500원이다.

〈1특송사의 반종〉

밥쌀	4되	4270원,	메밀	1되	1067원,	병미	3되	3200원
찹쌀	5홉	800원,	밀가루	1되	1067원,	소두	5홉	800원
대두	8되	8533원,	장태	4홉	427원,	주미	3되2홉	3413원
초미	4홉	427원,	견어	3마리	2133원,	청어	4마리	1067원
대구어	4조	2667원,	상어	4조	3200원,	전복	2개	6400원
해삼	5홉	1600원,	산닭	1/4마리	1867원,	미역	2냥	-
꿀	3작	640원,	참기름	1홉	2133원,	백합젓	6작	3200원
소금	2홉	64원,	겨자	4작	2133원,	진곡	9홉	960원
개암	3홉	640원,						

합계 1人 1일 52,700원

반종이 7명이므로 110일 동안 지급된 총 액수는 40,579,000원이다.

〈부특송사〉

일상식의 지급은 1특송사와 같으므로 정관은 총 합계 14,223,000원, 부관·도선주·2선주·유선주·봉진압물·사복압물·시봉 7인의 총 합계는 75,821,390원, 반종 7명은 40,582,080원, 격왜 90명의 총 합계는 211,20,000원이 된다.

이상 일상식의 지공을 위하여 지급된 액수는 세전 선송사에서 149,700,000원, 이정암송사에서 24,180,350원, 1특송사에서 130,080,000원, 2·3특송사에서 42,233,400원, 만송원송사에서 40,494,000원, 부특송사에서 151,746,500원으로, 총 합계는 538,434,000원이다. 이 금액은 인조 13년(1635) 세전선의 겸대제 이후에 정규적으로 입항하는 송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1635년 이전 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액수이고, 비정규적으로 내왕한 차왜(差僕)를 위한 접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1635년 이후 20여종이 넘는 차왜의 빈번한 내왕이 있었기 때문에, 차왜까지 포함하다면, 일상식을 위해 지출된 총 액수는 1년에 약 10억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왜인들의 신분의 차이에 따라 지급된 일상식을 비교함으로서, 당시의 계급 구조에 따른 일상식의 규모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일의 일상식 비용으로 가장 많이 지급된 순서부터 나열해 보면

1특송사의 정관	129,300원
1특송사의 도선주·2선주·봉진압물·사복압물·시봉	98,470원
세전제1선송사의 정관, 만송원의 정관	84,760원
세전제2선송사~4선송사의 정관, 이정암의 정관	84,230원
세전제1선송사의 도선주·압물시봉·	79,690원
1특송사의 반종	52,700원
세전제1선~제4선의 반종, 만송원의 반종, 이정암의		

반종 38,300원
모든 격왜 2,133원

으로, 129,300원부터 2,133원까지 8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8등급의 분류는 어디까지나, 정규적으로 입항하는 송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일상식에서의 숙공(熟供)과 찬품(饌品)

표 2는 조선 전기 국왕의 사신인 정관과, 조선 중기 1특송사의 정관에게 지급된 일상식을 위한 1일의 식품 재료와 분량이다(『해동제국기』), (하100~120). 전기에 비하여 중기에는 훨씬 많은 재료들이 등장하고 있다. 1특송사 보다는 국왕의 사신이 계급이 높은 것으로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중기에 이와같이 풍성해진 까닭은 표 2에 나타난 조선 전기의 재료들은 조반(早飯)을 제외한 조석반(朝夕飯)과 주점심(晝點心)을 위한 재료로서, 조선 전기에는 식품을 그냥 받기를 원할 경우 조반(早飯)은 숙공(熟供)하였고, 조석반과 주점심만을 제공하였기 때문이고(『해동제국기』), 조선 중기의 재료들은 조반(早飯)을 포함한 조석반·주점심을 위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표 2를 통하여, 조선 중기의 조반(早飯)에 사용된 식품재료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즉 메밀·병미·찹쌀·소두·꿀·황을·대추·꽃감·생을·홍시·광어·전복·대구어·상어·문어·해삼·닭·달걀이 조반에 사용된 식품 재료라고 말할 수 있다.

생선을 즐겨 먹는 일본인들의 기호를 생각해서 일까, 생선류가 재료로서 많이 취급되고 있다. 생선류는 전유어·생선회·탕·찜·죽 등의 재료로 쓰였을 것이다. 과일의 종류가 5가지인 점으로 미루어, 1특송사 정관에게는 조선전기에 국왕의 사신에게 제공되었던 거식칠과상(車食七果床)을 조반상(早飯床)으로 제공하였

〈표 2〉 조선전기와 조선중기에 일본사신인 正官에게 지급된 일상식을 위한 1일의 식품의 재료와 분량(『해동제국기』, 『증정교린지』)

곡류	조선 전기	조선 중기	과일 류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육류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채소 류	조선 전기	조선 중기	기타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조미 료류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생선류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쌀	4되	4되	황율	×	3홉	산닭	×	1/2 마리	미역	2냥	2냥	주미 (酒米)	×	3되 2홉	장태 (醬太)	×	5홉	건어	30개	5 마리
메밀	×	1되	대추	×	3홉	달걀	×	3개				차	2작	×	초미 (醋米)	×	4홉	청어	4 마리	4 마리
병미 (餅米)	×	3되	곶감	×	2串							청주	3병 <small>6량 7준</small>	×	꿀	×	5작	광어	×	4條
찹쌀	×	1되	생율	×	1되										참 기름	4작	1홉 8작	전복	×	1串
밀가 루	1되 4홉	2되	홍시	×	3개										백합 것	×	6작	생선 (生鮮)	1 마리	1 마리
소두	×	1되													새우 젓	5홉	×	대구 어	×	1 마리
대두	1말 2되	1말 2되													소금	1홉	3홉	상어	×	4條
															겨자	4작	4작	문어	×	1條
															간장	6작	×	해삼	×	5홉
															초	3작	×	준치	약 3條	
															진곡 (眞曲)	×	9홉	조기	1 마리	×
															육류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채소 류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산닭	×	1/2 마리	미역	2냥	2냥
															달걀	×	3개			

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의 거식칠과상은 과일 5종류와 유밀과 2종류로 칠과상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에 1특송사 정관에게 조반(早飯)으로 5일 동안 숙공하여 제공한 거식칠과상 중 특히 2일 동안 행하였던 숙공조반식(熟供早飯式) 때에는 “술 5순배와 또 삼색죽(三色粥)이 있다” 하였으므로, 조선 전기에 早飯床의 술의 안주로서 차렸던 초미(初味) · 이미(二味) · 삼미(三味)에 삼색죽을 각각 더하여 차려졌으리라 짐작된다(『통문관지』 卷5 「交隣」), (하, 118).

이상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조선 중기에 1특송사 정관에게 제공된 숙공(熟供)에서 조반상(早飯床)이, 조선 전기의 거식칠과상에 해당되므로, 조석반(朝夕飯)과 주점심(晝點心) 역시 조선 전기와 마찬가지로 각각 7첩상과 5첩상으로 숙공하여 제공되었을 것이다.

『해동제국기』에는 숙공하여 제공하는 일본 사신의 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여, 제1등급은 거식칠과상 · 7첩상 · 5첩상, 제2등급은 거식오과상 · 5첩상 · 3첩상, 제3등급은 오과상 · 7첩상 · 5첩상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해동제국기』). 조선 중기에도 숙공의 분류는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해동제국기』의 사신 접대 내용은 조선조 전반에 걸쳐 모범적 규례로서 적용하였기 때문이다⁷⁵⁾.

따라서 일상식에서 제공된 찬품(饌品) 역시, 1600년 대 명나라 사신에게 제공되었던 早飯을 비롯한 궁중에

75) 참고로 재판차와에게 지급된 早飯을 보면 훈죽 · 팔죽 · 베밀국수 · 떡 · 참깨떡 · 밤 · 자 · 호두 · 개암 · 대추 등 외에 가자미 · 대구 · 방어 · 말린해삼 · 달걀이 재료가 되었다.

〈표 3〉 일본사신에 대한 연회의 종류와 연회 회수 (『증정교린지』, 『통문관지』)

	세견제1선 송사	세견제2선송사~ 세견제4선송사	이정암송사	1특송사	만송원송사	부특송사
하선다례(下船茶禮)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하선연(下船宴)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노차연(路次宴)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예단다례(禮單茶禮)	1회	×	1회	1회	1회	1회
별연(別宴)	×	×	×	1회	×	1회
상선연(上船宴)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명일연(名日宴)	3회	×	×	4회	3회	4회

서의 외빈 접대 때에 차렸던 朝·夕飯을 참고로 하여, 『해동제국기』의 일본사신접대 기록을 필자가 도식화한, 前報의 조선전기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연회식

1) 연회의 종류

『증정교린지』와 『통문관지』에 나타나 있는 일본사신에 대한 연회의 종류를 분석한 것이 표 3이다(하, 17-42), (『통문관지』卷5 交隣). 하선다례(下船茶禮)·하선연(下船宴)⁷⁶⁾·노차연(路次宴)⁷⁷⁾·예단다례(禮單茶禮)·별연(別宴)·상선연(上船宴)⁷⁸⁾·명일연(名日宴)⁷⁹⁾으로 사신의 등급에 따라 10회에서 4회까지 연회를 베풀어 주고 있다. 조선 중기에는 전기와 달리 부산왜관에서 만 접대의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서 보이고 있는 경중영전연(京中迎餞宴)·궐내연·예조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연회에 소용된 식품의 재료와 분량

가장 큰 규모로 10회의 연회를 베풀어 주었던 1특송사의 경우에 10회에서 소용된 총 식품의 재료와 분량을 보면

주미(酒米)	2섬5밀2홉4작8리5푼
초미(醋米)	4밀3되7홉4작8리5푼
병미(餅米)	5섬5밀8되
찹쌀	2섬3밀6되4홉4작7리
탕미(湯米)	6섬7밀2되
포태(泡太)①	12밀
소두(小豆)	4밀5되7홉2작8리
녹두(菉豆)	2밀6홉2작6리5푼

메밀[木米]	1섬5밀3되
밀가루	10섬3밀5홉9작6리
콩가루	18섬1밀4되1홉7작6리
진곡(眞曲)	5司9圓1되
모곡(牟曲)	1섬4밀6되
참기름	2섬1밀3홉2작5리5푼
꿀[淸蜜]	11밀2되9홉3작
감장(甘醬)	8밀1되9홉9작7리5푼
간장(良醬)	4밀8되3홉4작
소금	3밀5홉7작4리5푼
겨자[芥子]	1밀2되1홉8작8리
생강	5되9홉2작
대추	3밀4홉8작9리
생율(生栗)	13밀7홉1작4리
황율(黃栗)	2밀9되4홉2작5리
배	495개
홍시	807개
곶감	19첩(貼)4꿰미[串]
잣	13밀5되9홉
호도	14밀2되4홉
개암	6밀2되4홉
오미자	1되5홉
지초(芝草)	1밀3되1홉6작
묘고버섯	4되2홉
산돼지	15마리
포육(脯肉)	34첩(貼)4條半
반건치(半乾雉)	49마리2쾌(快)

76) 하선연(下船宴) : 환영연.

77) 노차연(路次宴) : 노연(路宴).

78) 상선연(上船宴) : 환송연.

79) 명일연(名日宴) : 일본의 풍속에 1월 1일·3월 3일·5월 5일·6월 15일·7월 7일·7월 15일·8월 1일·9월 9일·10월 亥日을 명일(名日)로 삼고 있는 바, 이때에 베풀어 주는 연회를 말함.

활계(活鷄)	25마리1ヶ
달걀	980개
해삼	14말4되5홉
피백합(皮白蛤)	1082개半
생선(生鮮)	233마리
생복(生鮁)	905개
전복	6첩3개
홍합	14말4되5홉
문어	31마리1條
광어	237마리
상어	251마리2조
대구어	593마리2조
청어	116級3마리
건어(乾魚)	109束8마리

① 포태(泡太) : 두부 제조용 콩으로서, 1특송사에게 일상식을 위하여 제공되었던 식품들에 비하여 포태 · 녹두 · 보리 · 누룩[牟曲] · 생강 · 배 · 잣 · 호도 · 개암 · 오미자 · 지초 · 표고버섯 · 산돼지 · 포육 · 꿩 · 피백합 · 생복 · 홍합이 연회식 재료로서 더 제공되고 있다.

5. 연회 상차림에 소용된 비용

1특송사의 연회를 대상으로 하여 10회의 연회 때에 쓰여진 재료의 가격을 환산 하면 다음과 같다.

주미(酒米)	2섬5말2홉4작8리5푼	480,000원
초미(醋米)	4말3되7홉4작8리5푼	46,000원
병미(餅米)	5섬5말8되	1,128,500원
찹쌀	2섬3말6되4홉4작7리	698,250원
탕미(湯米)	6섬7말2되	1,356,800원
포태(泡太)	12말	128,000원
소두	4말5되7홉2작8리	50,870원
녹두	2말6홉2작6리5푼	33,000원
메밀	1섬5말3되	269,870원
밀가루	10섬3말5홉9작6리	2,165,870원
콩가루	18섬1말4되1홉7작6리	2,313,024원
진곡	5동9원1되	189,870원
모곡	1섬4말6되	157,440원
찹기름	2섬1말3홉2작5리5푼	8,752,940원
꿀	11말2되9홉3작	2,408,530원
감장	8말1되9홉9작7리5푼	-
간장	4말8되3홉4작	-
소금	3말5홉7작4리5푼	9,760원
겨자	1밀2되1홉8작8리	64,670원
생강	5되9홉2작	31,470원
대추	3말4홉8작9리	64,870원
생율	13말7홉1작4리	209,200원
황율	2말9되4홉2작5리	94,080원
배	495개	26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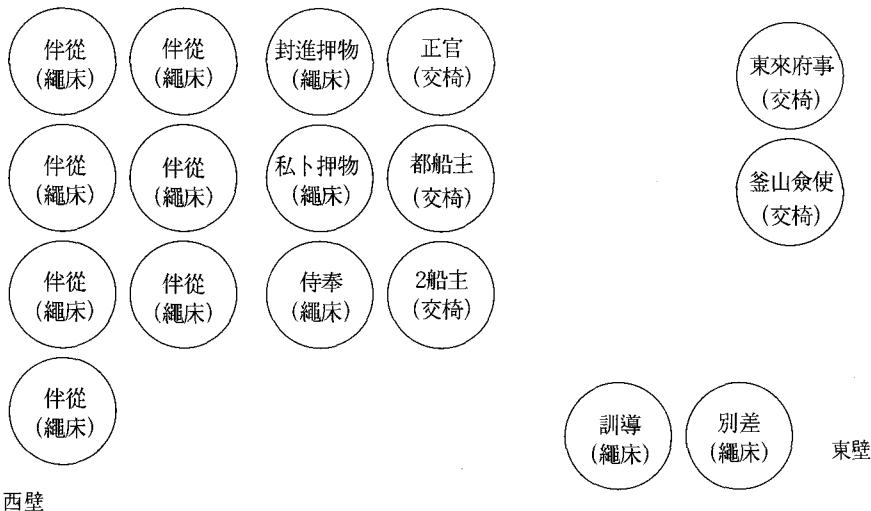
홍시	807개	688,640원
곶감	19첩4꿰미	310,400원
잣	13말5되9홉	144,960원
호도	14말2되4홉	151,890원
개암	6말2되4홉	133,120원
오미자	1되5홉	3,200원
지초	1말3되1홉6작	42,080원
표고버섯	4되2홉	17,920원
산돼지	15마리	-
포육	34첩4조반	1,093,330원
반찬치	49마리2ヶ	792,000원
활계	25마리1ヶ	188,530원
달걀	980개	522,670원
해삼	14말4되5홉	462,400원
피백합	1082개	173,120원
생선	233마리	4,970,670원
생복	905개	965,330원
전복	6첩3개	393,600원
홍합	14말4되5홉	308,270원
문어	31마리1조	166,000원
광어	237마리	1,264,000원
상어	251마리2조	1,608,000원
대구어	593마리2조	4,429,600원
청어	116급3마리	619,470원
건어	109속8마리	585,600원
합계		40,951,810원

로 총 합계는 40,951,810원이나, 이 액수는 산돼지 15마리의 값이 제외된 값이다. 산돼지를 1마리당 50만원으로 계산하여 합계를 내면 48,451,810원이 된다. 이상의 총 액수를 10회의 연회로 나누어 평균하면 1회의 연회에 평균 4,845,180원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사신에 대한 1년 간의 총 연회 횟수는 45회이므로 식품에 소용된 비용을 1회에 5,000,000으로 계산하면 년간 연회를 위하여 식품 구매에 든 비용은 2억2천5백만원으로 계산되고 있다.

6. 연회구성과 연회상차림 및 좌석배열

조선 전기와 달리, 부산왜관에서 전적으로 열렸던 송사에 대한 연회는, 그 접대에서의 상대역은 동래부사(東來府事)와 부산첨사(釜山僉使)이었으며⁸⁰⁾, 일본사신도 조선 전기에서는 정사(正使) · 부사(副使) · 정관(正官) · 수행원으로 구성된 것에 반하여, 중기 이후

80) 대차왜(大差倭)에 대한 연향은 경접위관(京接慰官)이 주관하고 동래부사도 함께 참여하였으며, 소차왜(小差倭)에 대한 연향은 향접위관(鄉接慰官)이 주관하고 그 예모



〈그림 1〉 1특송사를 위한 부산 왜관 연회에서의 좌석배열(『증정교린지』)

부터는 정관과 수행원으로 그 격이 격하되었다. 따라서 연회 역시 조선 전기의 비하여 수준이 격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례(茶禮)이든 연향(宴享)이든 꽃·풍악·기생과 춤·미수(味數)·찬탁(饌卓)·술로 연회는 구성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소동(小童)이 춤을 추었으나 광해군 4년(1612) 차왜(差倭)가 기생들의 춤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이후 소동 대신에 기생으로 대치되었다(하, 120).

송사(送使)⁸¹⁾들에 대한 연회에서의 좌석배열을 보면 그림 1과 같이 동·서로 나누어 동쪽에는 조선의 관리들이, 서쪽에는 일본의 송사들이 각각 직위에 따라 교의(交椅)와 승상(繩床)에 나누어 앉게끔 하고 있고, 남쪽에는 북향하여 훈도와 별차가 승상에 앉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는 그림 1과 같은 좌석 배열이 아니었다.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북쪽벽(北壁)에 앉고, 정관이 남쪽에서 북향하여 앉는 것이었다. 광해군 2년(1610)에 왜사(倭使)가 동서좌(東西座)로 할 것을 요청한 이후⁸²⁾, 그림 1과 같은 좌석배열로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소동 대신에 기생으로 대치된 것과, 그림 1과 같은 좌석배열은 임진왜란이후 보다 강해진 일본 사신들의 위치를 반영한 한 예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산 왜관에서 이루어졌던 연회는 연회에 앞서 일정한 격식이 있었다. 이 연회전의 의례격식을 살펴보면,

-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붉은 단령(紅團領)⁸³⁾을 입고 먼저 연향대청의 동상방(東上房)에 이른다.
- 훈도(訓導)가 관복을 갖추어 입은 정관(正官)이하를 이끌고 서쪽 협문을 지나 영외(楹外)⁸⁴⁾에 오른다. (동래부사·부산첨사·훈도·별차가

붉은 단령을 입으면 정관 이하도 관복을 갖추어 입고, 동래부사 이하가 용복(戎服)⁸⁵⁾을 입으면 정관 이하는 포의(布衣)⁸⁶⁾에 풍절오모자(風折烏帽子)를 착용함)

- 소통사(小通詞)⁸⁷⁾는 서계(書契)⁸⁸⁾를 받아들여 들고 정문(正門)을 경유하여 들어와 북쪽벽의 탁자 위에 놓는다(하선다례에 한함).
- 별차(別差)가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를 모시고 동문을 경유하고 나와 동쪽벽에서 서쪽을 향하여 선다.
- 정관 이하는 서쪽벽에서 동쪽을 향하여 선다.
- 반종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선다.
- 훈도와 별차는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선다.
- 동래부사와 정관이 마주보고 두 번 읍례(揖禮)를

는 모두 송사의 연향 때와 같았다.

81) 세견송사·특송사·이정암송사 등을 지칭함.

82) 동래부사 조존성이 반대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83) 붉은 단령(紅團領) : 붉은 빛깔의 단령. 단령이란 깃을 등 글에 만든 벼슬아치의 公服의 하나. 빛깔에 따라 홍단령과 흑단령으로 구분된다.

84) 영외(楹外) : 기둥 밖.

85) 용복(戎服) : 옛날 군복의 한가지. 철릭과 주립(朱笠)으로 되었다.

86) 포의(布衣) : 평상복.

87) 소통사(小通詞) : 위계가 낮은 통사. 통사란 한나라의 글이나 말을 다른 나라의 글이나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사람.

88) 서계(書契) : 조선시대 우리 나라에서 일본과 야인의 추장에게 通好를 허가한 신임장.

하면 훈도와 별차는 동시에 함께 읍(揖)한다.(相揖之禮)⁸⁹⁾

- 부산첨사와 정관이 마주보고 두번 읍례를 하면 훈도와 별차도 동시에 함께 읍한다.
- 이후 도선주 · 2선주 · 암물 · 시봉등도 정관의 예와 같이하고 훈도와 별차도 그렇게 한다.
- 동래부사 · 부산첨사 · 정관 · 선주는 교의(交椅)에 나가 앉고 암물 이하는 승상에 앉는다.
- 수통사(首通詞)⁹⁰⁾가 연향청에 올라 배홍(拜興)하고 와치면, 처마 끝에서 북쪽을 향하여 서있던 반종(伴從)이 일렬로 서서 두 번 반 배례(拜禮)를 한 후 정관의 뒤로 가서 장막을 사이에 두고 승상에 앉는다.
- 소통사가 서계를 반들여 바치면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차례로 열어 본다.(하선다례에 한함)
- 소통사가 ○○연을 올릴 것을 아뢴다.

이다. 이상의 의례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인 연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선다례에서는 찬탁(饌卓) · 찬삼미(饌三昧) · 술5순배, 하선연에서는 찬탁 · 찬칠미(饌七昧) · 술9순배 · 다담상 · 술3순배, 상선연에서는 찬탁 · 찬칠미 · 술9순배로서 상차림이 구성되었다(하, 115-125).

연회상차림의 구성 및 찬품은 일상식도 마찬가지로, 필자가 『조선왕조연회식의궤』에 나타난 상차림 구성 및 찬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金a), (金b), 1600년대 초부터 1900년 초까지 조미료의 첨삭만 차이가 날 뿐이고,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 전반에 걸쳐서 일상식을 비롯한 연회 음식 모두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선 중기의 일본사신 접대를 위한 연회상차림의 구성도 前報에서 밝힌 『해동제국기』에 나타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다만 조선 중기의 일본 사신 접대는 부산 왜관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동제국기』의 “삼포에서 행한 선위사의 정사 · 부사 · 정관을 위한 연회” 및 “名日宴”에 해당 될 것이다.

조선 전기에는 일본 사신 접대에서 술 5순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궐내연이든(『세종실록』·『五禮儀』) 예조연 및 삼포연(『해동제국기』)이든 술 5순배는 일본 사신 접대의 정식이었다. 이 술 5순배가 조선 중기에 와서는 하선연과 상선연에서 술 9순배로 바뀌고 있다. 여기서 조선 중기 하선연의 연회구성을 살펴보면 하선연은 연향의(宴享儀)와 중배례(重杯禮)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이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연향의(宴享儀)

찬탁(饌卓) · 풍악

술제1잔 · 풍악-선(膳) · 풍악-권화(勸花) · 풍악
술제2잔 · 풍악 - 초미 · 풍악
술제3잔 · 풍악 - 2미 · 풍악
술제4잔 · 풍악 - 3미 · 풍악
술제5잔 · 풍악 - 4미 · 풍악
술제6잔 · 풍악 - 5미 · 풍악
술제7잔 · 풍악 - 6미 · 풍악
술제8잔 · 풍악 - 7미 · 풍악
술제9잔 · 풍악

중배례(重杯禮)

술 9순배 이후 교의(交椅) 앞에 평배좌(平排坐)⁹¹⁾한다.

다담(茶啖) · 풍악 - 술 3순배 · 풍악

왜사(倭使)가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 훈도 · 별차에게 상찬(箱饌)을^{92), 93)} 올린다(하, 120-121).

연향의와 중배례에서의 술의 순배는 그 방법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 연향의에서는 동래부사가 정관에게 먼저 술 제1잔을 권하는 것에 반하여 중배례에서는 동래부사가 먼저 마시고 정관에게 술을 돌리는 형식으로, 전자는 현작(獻爵)의 개념이라면, 후자는 수작(酬爵)의 개념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연향의에서는 공식적인 연회의 성격으로 동래부사가 정관에게 먼저 술 제1잔을 주고(獻爵) 정관이 이를 마신 후에 동래부사에게 술잔을 반배하는 것(酬爵)까지가 술 제1잔이 되는 것인데(『국조오례의』 卷3 「禮曹宴」), 이러한 현작과 초작이 연향의에서 9번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후 중배례에서 수작이 형성됨으로서 비로소 현작 · 초작 · 수작으로 완성된 연회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金c, 111-113).

연향의에서의 술 순배 진행 절차는 예조에서 이웃 나라 사신에게 연회하는 의식을 기록한 『세종오례의』와 『국조오례의』에 기초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前報에 상세히 기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중배례에서의

89) 상읍지례(相揖之禮) : 서로 읍하는 예. 상읍례(相揖禮)는 접대의례를 행할 때 정관이 먼저 앞으로 나아가 재배(再拜)하면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답배(答拜)하고 선주 · 암물의 재배에 답읍(答揖)하는 『해동제국기』의 규정과는 달리 서로 읍(相揖)하는 것을 말한다. 상읍례가 처음 시행된 것은 1611년 10월로, 기유약조 체결 이후 외교사절로 처음 온 세견제1선송사 平智直의 연향숙배례(宴享肅拜禮) 때이다.

90) 수통사(首通詞) : 통사의 우두머리.

91) 평배좌(平排坐) : 의자를 벌여 놓지 아니하고 맨 바닥에 죽 들어 앉음.

92) 상찬(箱饌) : 찬합에 담은 음식.

93) 대차왜(大差倭)의 경우 접위관 앞에도 상찬을 올림.

술의 순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면,

맨 바닥에 죽 늘어앉은 다음 다담(茶啖)을 올리고 통인(通引)⁹⁴⁾이 동래 부사에게 술을 올리면 동래부사가 술을 마신다.

동래부사가 정관에게 술을 보내고 정관에게 술을 올리면 정관이 마신다.

정관이 동래부사에게 술을 보내고 동래부사에게 술을 올리면 동래부사가 술을 마신다.

로, 동래부사에게 두 번 돌리고 정관은 한번 돌려 모두 석잔을 마시게 된다. 이러한 술 3순례는 부산첨사·도선주·압물·시봉에게 차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것이 끝난 후에 비로소 왜사가 상찬을 올리고 있다.

이상과 같은 중례례는 광해군 원년(1609) 전 까지는 연향이 끝난 후에 주인과 손님이 각각 의자 앞에 서서 두잔을 마시는 것이었다. 1609년 이 후 따로 찬품을 내어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광해군 5년(1613) 일정한 형식을 가진 위와 같은 중례례를 정하게 된 것이다(하. 120).

조선 전기 일본 사신을 위한 예조연에서 보면 주었던 “공수재배(控首再拜)·공수답배(控首答拜)·돈수재배(頓首再拜)”, “소동의 춤”, “술 제5순례”와 같은 의례 절차는 『세종실록』(五禮儀)(『국조오례의』 卷3), 임진왜란 이후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여 “상읍지례(相揖之禮)”, “기생의 춤”, “술 제9순례 및 중례례” 등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1613년경에는 이 변형된 연회의례가 정착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VI. 맷는말

조선 전기 대일 통교의 중심지였던 삼포(三浦)는 임신약조(1512년)와 정미약조(1547년)를 거치면서 내이포와 염포가 폐쇄되고, 부산포가 유일한 개항지로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계해약조(1443년)에서 맺었던 세견선 50척은 25척으로砍감되게 되었다. 이러한 중에도 도요토미히데요시가 일을 친 임진왜란은 도요토미히데요시의 사망에 따라 선조 31년(1598) 7년간의 긴 전쟁의 종결을 고하고, 광해군 원년(1609) 기유약조의 체결로 20여년 동안 혼란했던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기유약조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는 대일관계의 전환점으로, 조선 중기 이후 대일관계의 중요한 변화를 제공하고 있다.

기유약조의 체결로 이후의 일본 사신 영접은 부산왜관에서만 전적으로 하게 되었고, 정례적으로 부산포에 오는 선박은 국왕사선·대마도주의 세견선·수도서인선·수직인선으로 하였으며, 비정규적으로 부산포에 오는 선박은 차왜로 하였다. 한편 조선 중기 이후에는

일본에 파견하는 조선의 사신 회수도 증가하게 되었고 조선에서는 에도(江戶)에 파견하는 통신사(通信使)와 대마도에 파견하는 문위역관(問慰譯官)이 있었다.

이들 양국의 사신의 주요 목적은 외교적인 성격도 있었으나 교역의 성격을 아울러 수행하는 것으로,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교역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동래부의 왜관을 통한 통상무역에는 진상(進上)과 공무역 및 사무역 외에 일본의 구청(求請)에 의한 구무(求買)가 있었으며, 통신사와 문위역관이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예단(禮單)이나 별폭(別幅)은 진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온 교역물자 가운데 후추·다목·백반·대화진주(大和眞珠)등은 진상품이고, 동철·납철은 공무역이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간 교역물자 가운데 인삼·표범가죽·범가죽·꽃자리·황모필·백저포·흑마포·백목면·백면주·참먹·매 등은 진상품이었고, 쌀·콩·무명은 공무역이었으며, 꿀·들기름·녹말·율무·호두·잣·대추·개암·황율등의 식품류, 한약재류, 금수류, 그릇류, 서책류, 문방구류, 악기류, 기타 등 넓은 범위의 각종 물품이 구청(求請)에 의한 구무(求買) 형태로 수출되고 있었다. 일본으로 수출된 물품 가운데 쌀·콩·오미자·인삼·잣 등은 조선 초기부터 계속되어 일본에 유입되고 있는 식품류이고, 조선으로 유입된 물품 가운데 후추 역시 조선 초기부터 일본에서의 진상품과 사(私)무역품의 하나이었다.

기유약조의 체결 이후 외교와 무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에 온 사신들은 특송사는 110일, 세견선사는 85일, 차왜는 55일, 대차왜는 60일, 재판차왜는 무한정 왜관에 머물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들이 부산 왜관에 머무는 동안의 일상식과 연회식의 상차림은 조선 전기의 『해동제국기』에 나타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있다. 다만 조선 중기의 일본 사신 접대는 부산 왜관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동제국기』의 “삼포연”과 “명일연”에 해당될 것이다.

일상식을 위해 지급된 하루분의 재료를 1특송사의 정관과 격왜의 경우로 보면, 쌀·메밀·멥쌀·찹쌀·밀가루·소두·대두·장태(醬太)·주미(酒米)·초미(醋米)·건어·청어·광어·전복·생선(生鮮)·대구어·상어·문어·해삼·미역·닭·달걀·꿀·참기름·백합젓·소금·겨자·진곡·황율·대추·곶감·생율·홍시의 33종류가 정관을 위한 일공이었고, 다만 쌀 2되가 격왜를 위한 일공이었다. 이렇듯 왜인들의 신분의 차이에 따라 지급된 일상식의 하루분 재료를 경

94) 통인(通引) : 조선시대 지방관아에 딸린 史屬, 수령의 임금부름을 맡아 하였다.

규직으로 입항하는 송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의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1특송사의 정관	129,300원
1특송사의 도선주	98,470원
세견제1선송사의 정관	84,760원
세견제2선송사의 정관	84,230원
세견제1선송사의 도선주	79,690원
1특송사의 반종	52,700원
세견선의 반종	38,300원
격례	2,133원

으로 계산되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정규적으로 해마다 입항하는 송사들에게 지급된 1년간의 일상식 지공의 총 액수는

세견선송사	149,700,000원
이정암송사	24,180,350원
1특송사	130,080,000원
2 · 3특송사	42,233,400원
만송원송사	40,494,000원
부특송사	151,746,500원

이 산출되었으며, 총 합계는 538,434,000원이다. 이 금액은 인조 13년(1635) 세견선의 겹대제 이후에 정규적으로 입항하는 송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1635년 이전 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액수이고 비정규적으로 내왕한 차왜(差倭)를 위한 접대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조반(早飯) · 조반(朝飯) · 주점심(晝點心) · 석반(夕飯)으로 구성된 일상식 중에서 가장 화려하게 차렸던 것은 조선 전기와 마찬가지로 조반(早飯)이었다. 5일 동안 숙공하여 제공하는 중 2일 동안 행하였던 숙공조반식(熟供早飯式) 때에는 거식칠과상(車食七果床) 외에 삼미(三味)와 삼색죽(三色粥) 및 술 5순배가 있었으며, 조반(早飯)으로 거식칠과상을 차리는 정관에 해당되는 계급은 조반(朝飯)에 7첩상, 석반(夕飯)에 7첩상, 주점심(晝點心)에 5첩상을 차렸다.

연회의 종류에는 하선다례 · 하선연 · 노차연 · 예단다례 · 별연 · 상선연 · 명일연이 있었다. 사신의 등급에 따라 10회에서 4회까지 연회를 베풀었는데, 연회에 소용된 식품의 재료를 1특송사로 예를 들어보면, 주미(酒米) · 초미(醋米) · 떡쌀 · 찹쌀 · 탕미(湯米) · 포태(泡太) · 소두 · 녹두 · 메밀 · 밀가루 · 콩가루 · 진곡(眞曲) · 모곡(牟曲) · 참기름 · 꿀 · 감장 · 간장 · 소금 · 격자 · 생강 · 대추 · 생율 · 황율 · 배 · 홍시 · 곶감 · 잣 · 호도 · 개암 · 오미자 · 지초 · 표고버섯 · 산돼지 · 포육 · 반건치(半乾雉) · 닭 · 달걀 · 해삼 · 피백합 · 생

선 · 전복 · 홍합 · 문어 · 광어 · 상어 · 대구어 · 청어 · 건어로 49종류에 이르고 있다. 1특송사의 연회를 대상으로 하여 10회의 연회때에 소용된 식품의 값을 현재의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는 약 48,451,810원이 되고, 1 회의 연회에는 평균 4,845,180원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 일본사신에 대하여 조선에서 베풀은 연회 횟수는 45회이므로, 식품에 소용된 비용을 1회에 5,000,000원으로 계산하여도 년간 연회를 위하여 식품구매에 소용된 비용은 2억2천5백만원이 되는 셈이다.

일본 사신을 위한 연회는 임진왜란 이후 약간의 변형을 보이고 있는데, 조선 전기의 연회 구성에서 있던 “공수재배 · 공수답배 · 돈수재배”, “소동의 춤”, “술제5순배”는 사라지기 시작하여 “상읍지례”, “기생의 춤”, “술제9순배 및 중배례”등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1613년경에는 이 변형된 연회의례가 정착되기에 이르렀으며, 중배례 때에 왜사가 동래부사등에게 올리는 상찬(箱饌)은 소위 왜찬합을 지칭한 것으로, 조선 중기 일본의 찬합 문화가 한반도로 유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찬합은 조선왕조 말까지 궁중의 연회 때에도 올려지는 친품의 하나가 되고 있다.

■ 참고문헌

- 1) 하우봉 · 홍성덕 역, 『국역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 2) 부산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 『釜山市史』 제1권, 1989.
- 3) 金尙寶a, 『朝鮮王朝宮中儀軌飲食文化』, 修學社, 1995.
- 4) 金尙寶b, 『朝鮮王朝宮中宴會食儀軌飲食의 實際』, 修學社, 1995.
- 5) 金尙寶c, 「東アジアにおける儀禮の饗宴」, 『國立民族學博物館研究報告』 19卷 1号, 1994.
- 6) 申叔舟, 『海東諸國記』.
- 7) 『世宗實錄』.
- 8) 『中宗實錄』.
- 9) 『明宗實錄』.
- 10) 『國朝五禮儀』.
- 11) 金健瑞, 『增正交隣志』, 1802
- 12) 『通文館志』.
- 13) 『倭人求詣贍錄』.
- 14) 『迎接都監儀軌』, 1609, 1610.
- 15)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2.
- 1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韓國漢字語辭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5.